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승수·김예지・임이자

우재준 • 성일종 • 박충권

주호영 · 신성범 · 박성훈

김위상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 조, 제6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 유해성 확인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66조제1항 본문 중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를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 기준 및 절차에"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가 확인

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		
	년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		
	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u><신 설></u>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 • 게시되거		
	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		
	소년 유해성 확인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u>것</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			
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			
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			
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u>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u>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 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6 제1항에 따른 <u>유해성 여부</u> 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으로 정한다.

<신 설>

- <u>영상물</u>	등급위	원회	또는	제 <u>66</u>
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	<u></u> 루류사
<u>업자로부</u>	<u>-터</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 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 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 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 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 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

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영 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 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 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광고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 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